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이름,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이름)의 변호사: 팩스번호: (선택):	법원용 <h2 style="text-align: center;">참고용</h2> <h1 style="text-align: center;">제출하지 마시오</h1>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다음에 대한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리 대상자 (이름): <div style="text-align: right;">피후견인</div>	사건 번호: <h2 style="text-align: center;">제출하지 마시오</h2>
피후견인 권리 고지	

누군가 피후견인이 된다고 하여 본인의 재산과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후견인은 누구나 이해와 존중으로써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의 희망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누구나 기본 인권이 있고 본인의 후견인에게 좋은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제도와 후견인의 행위에 관해 질문을 하고 우려와 불만을 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후견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제도 관리 실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이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법원 조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피후견인에게 보내 현재 상황과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피후견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고지하게 합니다. 법원은 또 피후견인을 대리할 변호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취지에 맞게 자유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받습니다. 후견인은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 피후견인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피후견인이 본인의 능력 하에서 최대한 행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피후견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권리

후견인 선임 후에도 피후견인에게는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할 권리
- 판사에게 후견인 교체를 요청할 권리
- 판사에게 법정대리인 제도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
- 본인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권리
- 본인 급여를 직접 수령하고 관리할 권리
- 용돈(법원이 후견인에게 사적인 용도로 쓰도록 피후견인에게 직접 쥐도 좋다고 허용한 돈을 말함)을 관리할 권리

(피후견인의 권리는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다음에 대한 후견인 법정대리 재산관리
대상자 (이름):

참고용

피후견인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피후견인의 권리 (계속)

피후견인은 권리는 법원에서 제한하거나 거두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적인 우편물을 받을 권리
- 투표할 권리
- 결혼을 하거나 등록된 동거 관계를 맺을 권리
- 가족과 친구에게 방문을 받을 권리
- 본인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권리
- 거래를 할 권리. 단 (1) 피후견인과 그 미성년자 자녀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2) 배우자의 생필품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기본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 그 외에 후견인 임명 시점에 또는 추후에 법원이 요청을 받고 심리를 통해 피보호자에게 허용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 피후견인이 **한정 피후견인일** 경우 법원이 한정 후견인에게 귀속시킨 것 외에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페이지 우송 증명)

(4 페이지에 우송 요령)

다음에 대한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리 대상자 (이름):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피후견인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와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 우송 요령

우송 증명

- 우송 대상:** 후견인, 후견인 변호사 또는 후견인의 직원은 본 피후견인 권리고지서 사본 1부에 유언 검인 후견인선임 명령서 1부를 첨부하여 아래 항목 2에 기재된 사람 각각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이때 사법관의 서명과 제출 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수령인:** 본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와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
 - 피후견인의 변호사(있을 경우)
 - 상속법 섹션 1821(b)에 명시된 피후견인의 친인척(배우자 또는 등록 동 파트너와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2급 친척)
 -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
 - 부모
 - 12세 이상 자녀(1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 e 참조)
 - 조부모
 - 12세 이상인 손자녀 (12세 미만인 손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 e 참조)
 - 형제자매(이복 형제자매 포함)
 - 후견인이 파악하기에 피후견인에게 배우자나 등록 동거 파트너, 또는 2급 친척이 없다면 본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와 상속 관리자 선임 명령서 사본은 다음 사람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 파트너
 - 피후견인의 사망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등록 동거 파트너의 자녀로서 12세 이상인 자(12세 미만인 자녀가 있다면 아래 항목 e 참조)
 - 피후견인 부모의 형제자매(피후견인의 고모와 삼촌), 없다면 12세 이상인 친자녀와 입양 자녀 (12세 미만인 자녀가 있다면 아래 항목 e 참조)
 - 피후견인 형제자매의 친자녀와 입양 자녀로서 12세 이상인 자(12세 미만인 자녀가 있다면 아래 항목 e 참조)
 - 후견인이 파악하기에 피후견인에게 배우자나 등록 동거 파트너, 또는 2급 친척이 없다면 본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와 상속 관리자 선임 명령서 사본은 다음 사람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 우송 완료 기한:** 항목 1의 우송은 상속후견인 선임 명령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우송 증명서 작성:** 후견인 또는 등록 변호사는 본 양식 3쪽의 우송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위 항목 2에 명시된 우송을 받는 자의 주소를 바르게 기재한 후에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송 증명서를 작성 시 우송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을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송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름과 주소를 따로 페이지에 적어 본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피 보호자 권리 고지 첨부(GC-341(MA) 양식) 문서를 1부 이상이 목적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아래 항목 5에 명시된 우송이 끝나면 후견인 또는 그 변호사는 본 양식 3 페이지의 우송 증명서에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우송 방법:** 후견인, 후견인의 등록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직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사본에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을 첨부하고 이것을 봉투에 넣고 봉인한 후 본 양식 3 페이지 우송 증명서 또는 별첨 추가 페이지에 기재된 사람 각각의 주소를 기재하고 우편 요금을 전액 결제합니다.
 - 본 양식 3페이지 우송 증명서 항목 4의 일자와 장소(시, 주)에서 봉인한 봉투를 미국 우정국에 전달합니다.
-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의 제출:** 후견인 또는 그 등록 변호사는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원본과 서명, 일자가 기재된 우송 증명서, 추가 주소 페이지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때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은 첨부하지 마십시오.